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02호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공 고

- 공 고 제 1205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감 사 실 2
○ 의회사무국공고 제 33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 회 사 무 국 4
및 의견수렴

고 시

- 고 시 제 79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1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205호

◎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3-2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 6. 30.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전)센터장		성명	박보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519,000	0	0	519,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건물 59.99㎡ 중 59.00㎡	519,000	0	0	519,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700	0	100	1,6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투싼 배기량(2,000cc)	1,700	0	100	1,600	
▶ 예금(소계)			73,401	4,921	6,594	71,728	
본인		국민은행 9, 삼성화재해상보험 572(39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500, 신한은행 1,722(874 증가)	1,890	938	25	2,803	퇴직금
배우자		국민은행 2,892(92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2,297(858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7,42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 신한은행 13,517(812 증가), 유안타증권 10, 한국투자증권 506(183 감소)	35,071	1,783	204	36,650	
장녀		(주)KEB하나은행 124(240 감소), KB라이프생명보험(KB생명보험) 13,000(400 증가), 국민은행 8,159(4,567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234(296 증가), 신한은행 7,200, 우리은행 0(58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78(1 증가), 한국투자증권 180(3 증가)	36,440	2,200	6,365	32,275	
▶ 증권(소계)			1,681	641	83	2,239	
배우자	상장주식	금호타이어 1주, 삼성전자 8주(3주 증가)	278	237	0	515	퇴직금
장녀	상장주식	기아 13주, 루시드그룹 5주, 소파이테크놀로지 10주, 애플 1주, 에이비프로바이오 100주, 지놈앤컴퍼니 5주, 테슬라 0.008142주, 팔란타어테크놀로지스 6주, 프로테라 20주, 피플바이오 6주	1,403	404	83	1,724	퇴직금
▶ 채무(소계)			250,108	248,412	250,108	248,412	
본인	금융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 248,412(1,696 감소)	250,108	248,412	250,108	248,412	
▶ 금 및 백금(소계)			592	0	0	592	
배우자		한국금거래소(금) 11g	296	0	0	296	
배우자		한국금거래소(금) 11g	296	0	0	296	
총 계			346,266	-242,850	-243,331	346,747	증감액: 481천원 (가액변동: 221천원)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33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사항 반영 : 안 제9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안 제12조제2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 확대(10일 → 15일로 변경 : 안 제12조제3항제2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30. ~ 7. 5.(5일간)**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5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 의 자 : 이철상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사항 반영 : 안 제9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안 제12조제2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 확대(10일 → 15일) : 안 제12조제3항제2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 (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9조 (신분증)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 -----.
제12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생략)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4. (생략) ④ ~ ⑥ (생략)	제1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③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15일 3.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임 문 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7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63-6 (만수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24-23 (간석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98, 5-5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63-6 (만수동)	2009.11.16.	만수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06.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83번길 63-6 기초구간에위치하여63-6 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5-2, 1085, 108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23번길 29 (만수동)	2009.11.16.	담방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06.3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담방서로23번길 29 기초구간에위치하여29를 건물번호로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24-23 (간석동)	2023.06.30.	건축물대장말소	